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 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



성공

2019년 12월 3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2호

## 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자본금) ① 공사 설립 시의 자본금은 4억2천만원, 수권자본금은 5,000억원으로 하고,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공고방법)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[www.gunpouc.or.kr](http://www.gunpouc.or.kr))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,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박 양 수 (390-7617)

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4조(자본금)</b> ① <u>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,000억원으로 하고,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<b>제4조(자본금)</b> ① <u>공사 설립 시의 자본금은 4억2천만원, 수권자본금은 5,000억원으로 하고,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</u></p> <p>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5조(공고방법)</b> <u>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포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,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5조(공고방법)</b> <u>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gunpouc.or.kr)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,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